

입법예고 종법령명	신도재교육시행령 개정안		
담 당	포교원 포교부 신도팀 (02-2011-1896)	입법예고일	2025년 2월10일 ~ 3월 1일

1. 개정이유 및 취지

- 중앙중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신도재교육 교육기관 관장 부서 변경 및 자구 수 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도재교육 교육기관 관장 및 교육형태의 선정 부서 변경함(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 개정).
- 나. 유명무실화된 신도품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(제10조 2항 삭 제).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신도법 제14조 및 제16조, 제 42조에 의하여 신도재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영은 신도법에 의하여 신도재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5조(교육기관 및 교육기관의 의무) ① 신도재교 육의 교육기관 및 교육주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 1. 포교원 2. 교구본사 3. 포교원에서 인가한 신도재교육기관 4. 중단 등록 사찰 ② 재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. 1. 중단의 중헌·중법·중령을 준수할 의무 2. 운영 보고의 의무 3. 교육관리 지침 준수의 의무 4. 기타 중단 인가기관의 의무	제5조(교육기관 및 교육기관의 의무) ① 신도재교 육의 교육기관 및 교육주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 1. 포교부 2. 교구본사 3. 중단 에서 인가한 신도재교육기관 4. 중단 등록 사찰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교육형태의 선정) 각급 교육기관은 제2조 및 제4조의 목적과 내용 달성을 전제로 교육대상에 따 라 다음 각 호 등의 교육형태를 선정할 수 있다.	제6조(교육형태의 선정) 각급 교육기관은 제2조 및 제4조의 목적과 내용 달성을 전제로 교육대상에 따 라 다음 각 호 등의 교육형태를 선정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<p>1. 포교원 : 중단소집 집체교육연수</p> <p>2. 교구본사 : 교구별 신도임원연수, 교구별 연합법회 및 행사</p> <p>3. 포교원 인가 재교육기관 : 중단인정 제반 신도임원의 교육연수</p> <p>4. 중단 등록 사찰 : 신도회 임원교육, 법회, 사중 목적 행사 및 제반 불사 참여</p>	<p>1. 포교부 : 중단소집 집체교육연수</p> <p>2. 교구본사 : 교구별 신도임원연수, 교구별 연합법회 및 행사</p> <p>3. 중단 인가 신도재교육기관 : 중단인정 제반 신도임원의 교육연수</p> <p>4. 중단 등록 사찰 : 신도회 임원교육, 법회, 사중 목적 행사 및 제반 불사 참여</p>
<p>제7조(신도전문교육 이수와의 같음 요건) ① 이 영 시행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신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충족으로 신도전문교육 이수에 같음토록 할 수 있다.</p> <p>1. 제6조 1호의 교육연수 등 : 4회 이상 이수</p> <p>2. 제6조 2호의 연수 및 행사 등 : 8회 이상 이수</p> <p>3. 제6조 3호의 교육연수 등 : 8회 이상 이수</p> <p>4. 제6조 4호의 교육신행 등 : 재적사찰에서 3년 이상 참여</p> <p>② 본조 1항 신도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같음 적용은 동등 품계 품수의 같음요건에 한하며, 각급 재교육기관의 중단보고에 의거 포교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.</p>	<p>제7조(신도전문교육 이수와의 같음 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본조 1항 신도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같음 적용은 각급 재교육기관의 중단보고에 의거 중단의 승인으로 시행한다.</p>
<p>제8조(교육현황 보고) ① 신도재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재교육 시행과 병행하여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 '신도재교육 현황 보고서'를 작성하여 관할 교구본사 포교국 및 포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이수자 명단</p> <p>2. 재교육 시행 일정표</p> <p>3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p>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6조 1항 3호의 재교육기관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교육현황 보고) ① 신도재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재교육 시행과 병행하여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 '신도재교육 현황 보고서'를 작성하여 관할 교구본사 포교국 및 중단 포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교육 이수증 및 신도품계 수여) ① 신도재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신도재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대표자 명의의 신도재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포교원은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품계회장을 교부하며 교육기관장은 교육이수자에게 신도품계를 품서한다.</p>	<p>제10조(교육 이수증 수여) 신도재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신도재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대표자 명의의 신도재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항 삭제></p>
<p>제11조(지도감독) ① 포교원장은 신도재교육기관에</p>	<p>제11조(지도감독) ① 포교부장은 신도재교육기관에</p>

현행	개정안
<p>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포교원장은 1항의 권한을 교구본사 포교국에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구본사 포교국장은 지도 감독 결과를 포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대하여 지도 감독한다.</p> <p>② 포교부장은 1항의 권한을 교구본사 포교국에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구본사 포교국장은 지도 감독 결과를 포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p>제12조(운영규칙)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교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교원장이 정한다.</p>	<p>제12조(운영규칙)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〈신설〉</p>	<p>부칙<불기2569(2025).00.00 개정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